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94
------	------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김영섭 의원

찬 성 자 :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금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 등 계획 수립(안 제3조)
-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4조)
- 다. 응급처치 교육(안 제5조)
- 라. 응급의료 지원(안 제6조)
- 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 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제2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 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5. 14.]